

農家副業經營의 類型區分 및 傳統的 農家副業 概念의 檢討*

李容晚

責任研究員, 農村開發研究室

金衡模

清州大學 專任講師

I. 序論

- II. 農家副業經營 類型區分을 위한 尺度作成
- III. 農家副業經營의 類型區分 및 傳統的 農家副業
概念의 檢討
- IV. 要約 및 結論

I. 序論

1. 問題의 提起

農家副業이 政策的 次元에서 全國的인 規模로 育成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부터였다. 즉 1967년 11월 農村遊休勞動力を 活用하여 農家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도록 農家副業을 振興시키라는 대 통령의 特別지시에 따라(농업경제, 1968, pp. 15-16) 1967년에 농촌진흥청에서 地域社會 開發事業의 일환으로 18개 지역에 示範事業으로 추진

하고 있던 農村副業團地를 1968년부터 농수산부가 주관하여 全國的인 規模로 擴大, 造成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에 農村副業育成 政策의 基本目的은 米麥 為主의 農業生產은 季節的으로 유후노동력이 발생하나 이를 흡수할 農外就業 機會가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農村地域에서 散發的으로 경영되어 오고 있는 傳統的인 農家副業을 集團化시키고, 現代化시키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農村過剩人口를活性화시키고, 農家所得을 增大시키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농가부업편람 1977, pp. 22-23).

당국에 의하여 造成되어 嫁動되고 있는 農村副業團地는 1979년 말 현재 627개에 이르고 있다(농수산부, 1980). 그러나 1970년대에 都市化·工業化的 促進으로 農村의 社會經濟構造가 변화되고 부업제품의 大부분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됨에 따라 농가부업 경영도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1978년부터 당국에서는 農家副業 政策의 方向轉換을 試圖하고 있다¹.

* 이 논문은 당 연구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農家副業育成 政策方案”에 관한 연구 중 농가부업 경영실태의 일부를 분석한 것이며, 동 연구 결과는 금년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農家副業政策을 어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農家副業經營의 形態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경영형태에 따라 어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原因分析이 필요하다.

農家副業의 經營形態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농가부업경영의 形태를 綜合의으로 測定할 수 있는 指標가 設定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가부업은 품목이 다양하고 조성지역도 전국적으로 널리 分散되어 있으며 같은 품목일지라도 造成地域이나 經營農家の 特性에 따라 그 經營形態가 다양할 뿐 아니라 농가부업경영은 零細한 企業體의 性格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 으로 부업을 구분하고 있는 勞動配分이나 所得比率와 施設額과 常時從業員數 등 經營規模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綜合의인 指標設定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農家副業經營 形態를 測定할 수 있는 尺度를 作成하고, 이에 의거하여 農家副業經營의 類型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농가부업경영 유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農家副業 概念을 검토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 및 節次

본논문에서 사용된 資料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農家副業育成方案”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의 일부로서 1980년 7월과 8월 사이에 전국 16 개군의 47개 단지에서 59개 副業經營農家の 經營者로부터 直接面接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調查對象地域은 농촌부업단지가 4개 이상 조성되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가 있는 郡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부업경영농가는 각 團地의 副業 生產農家 數에 비례하여 1~2호씩 無作為 抽出하였다.

본 논문에서 尺度作成은 任意指數構成法(Arbitrary Index Construction)을 이용하였으며, 作成된 指數는 지수로서 갖추어야 할 諸要件, 즉 信賴度 및 內的妥當度를 검토하였으며, 統計分析은 百分率을 이용한 交叉分析이 적용될 것이다.

II. 農家副業經營 類型區分을 위한 尺度作成

農家副業經營 類型을 구분하기 위해서 任意指數構成法에 의한 農家副業經營 指數를 작성하였다. 임의지수구성법이란 분석지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몇 개의 문항을 等級化하고 一定한 評點을 賦與하여 각 문항 점수의 總和를 分析指標로 이용하는 社會學的 分析方法의 하나이다 (문승규 1967, pp. 18-24).

1. 指數構成 問項의 選定

農家副業 經營指數를 작성하기 위한 구성 문항은 농가부업의 專業化 정도와 農家副業의 經營規模를 고려하고, 또한 傳統的 農家副業의 特徵²을 고려하여 副業施設額, 常時雇傭從業員數, 農家所得 중 副業所得 比率, 自家勞動의 副業經營 勞動投下比率 등 4가지 문항을 <表 1>과 같이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農家副業의 專業化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농가소득 중 부업소득 비율, 자가노동의 부업경영노동 투하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이 두가지 문항을 선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主業과 副業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勞動投下 時間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노동투하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所得比率을 고려하고 있으나(농가경제조사해설, 1977, p. 9), 그 중 어느 한 指標만을 기준할 경우에는 정확한 專業化 程度의 測定이 어려울 것으로

表 1 農家副業 經營指數 構成項目과 評點基準

| 構 成 項 目 | | 評 點 基 準 | | |
|-------------|------------------|------------|---------------|------------|
| 傳統的 副業經營特徵 | 指 數 構 成 間 項 | 副業經營 (1점) | 中 間 (2점) | 轉業經營 (3점) |
| 手工業的 資本裝備所有 | 副業施設額 | 2,000천원 이하 | 2,000~5,000이하 | 5,000천원 이상 |
| 自家勞動 中心 | 常時雇傭從業員數 | 없음 | 5인 이하 | 5인 이상 |
| 主業生產補完 | 農家所得 中 副業所得 比率 | 50%이하 | 50~70% | 70%이상 |
| 農閑期(季節的) 經營 | 自家勞動의 副業經營 投下 比率 | 50%이하 | 50~70% | 70%이상 |

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企業體의 經營規模 分類는 상시종업원 수를 기준하여 분류하고 있으나³, 부업경영은 대부분 영세하여 종업원 고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分類基準을 약간 수정하여 상시고용 종업원 수와 副業施設額으로 經營規模測定問項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 構成問項의 等級化 및 評點賦與

이상과 같이 指數構成 問項을 선정하여 선정된 각 문항을 <表 1>과 같이 3등급 하고 複數加重評點制를 채택하여, 副業經營에는 1점, 中間에는 2점, 專業經營에는 3점씩을 賦與하여 각 문항별 點數의 總和를 갖고 指數를 작성하였다.

副業施設額의 구분에 있어서 최저선을 2,000천원 이하로 한 것은 부업시설액이 建物과 生產機材의 評價였기 때문에 1979년 전국 평균농가의 農家固定資產 중 토지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을 고려하였고 (1979년 농가고정자산 10,430천원 중 토지 제외 고정자산은 1,705천원이었음), 과거에 농촌부업단지 조성시 시설액 지원이 단지당 평

균 2,000천원 정도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農家가 副業經營施設을 한다고 할 경우 負債를 지지 않거나 負債償還이 가능한 財產의 最低線을 기준하였다. 기타 3가지 문항의 最低線의設定은 農家副業經營의 特徵이나 專業化測定의 최저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表 2 農家副業經營 指數上의 評點別

59 副業經營農家의 分布

| 指數上의 評點 | 副業經營者數 | 比 率 |
|---------|--------|-------|
| 4 | 13 | 22.0 |
| 5 | 5 | 8.5 |
| 6 | 9 | 15.3 |
| 7 | 6 | 10.2 |
| 8 | 7 | 11.9 |
| 9 | 5 | 8.5 |
| 10 | 7 | 11.9 |
| 11 | 5 | 8.5 |
| 12 | 2 | 3.4 |
| 계 | 59 | 100.0 |

* 平均 : 7.2 標準偏差 : 2.5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면 個別 副業經營者的指數 評點은 4개의 문항에서 얻어지는 評點의 總和이기 때문에 개별 부업경영자가 얻을 수 있는 評點範圍는 4점~12점이었다.

이와 같이 작성된 農家副業經營 指數의 評點

表 3 指數使用 問項의 內의 安當度

| 구 分 | 부업 시설액 | 상시고용 종업원 수 | 농가소득의 부업소득 비율 | 자가노동의 부업경영 노동 투하 비율 | 지수총화 |
|---------------------|--------|------------|---------------|---------------------|---------|
| 부업시설액 | 1.000 | 0.6222** | 0.101 | 0.522** | 0.756** |
| 상시고용 종업원 수 | | 1.000 | 0.262* | 0.557** | 0.787** |
| 농가소득의 부업소득 비율 | | | 1.000 | 0.5380** | 0.614** |
| 자가노동의 부업경영 노동 투하 비율 | | | | 1.000 | 0.860** |
| 지수총화 | | | | | 1.000 |

* 5% 수준에서 유의함.

** 1% 수준에서 유의함.

別 副業經營者의 分布는 <表 2>와 같았다.

3. 指數의 信賴度 檢證

앞에서 作成된 指數가 尺度로 사용이 가능할 가를 檢證하기 위하여 信賴度 係數를 算出하였다.

갓트만 공식⁴에 의하여 산출된 信賴度 係數는 0.96으로 指數의 信賴度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각 문항간의 內的妥當度도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편이어서 척도로서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III. 農家副業經營의 類型區分 및 傳統的 農家副業 概念⁵의 檢討

1. 農家副業經營의 類型區分과 그 性格分析

I에서 작성한 농가부업경영 지수의 평균에 標準偏差를 加減하여 <表 4>와 같이 農家副業의 經營類型을 I(傳統的副業經營), II(中間), III(專業經營)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表 4>에 의하면 農家單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副業經營은 傳統的인 副業經營形態가 30.5%에 불과하고 專業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부업경영은 (II+III) 69.5%로 나타나고 있어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副業經營은 대부분 專業化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農家副業經營類型이 耕地規模別로는 어떠한 가를 분석한 것이 <表 5>이다. 농가부업 경영유

表 4 農業副業經營類型의 区分

| 經營類型 | 評點範圍 | 副業經營者數 | 比率 |
|-------------|-------|--------|-------|
| I (傳統的副業經營) | 4~5점 | 18호 | 30.5% |
| II (中間) | 6~9 | 27 | 45.8 |
| III (專業的經營) | 10~12 | 14 | 23.7 |
| 계 | | 59 | 100.0 |

表 5 農家副業經營類型과 耕地規模의 關係

單位: 戶 (%)

| 구분 | 영세소농 (3,000명 이하) | 중 농 (3,000~ 6,000명) | 대 농 (6,000명 이상) | 계 |
|-----|------------------------|---------------------------|-----------------------|-----------|
| I | 8(21.6) | 4(26.7) | 6(85.7) | 18(30.5) |
| II | 18(48.7) | 8(53.3) | 1(14.3) | 27(45.8) |
| III | 11(29.7) | 3(20.0) | — | 14(23.7) |
| 계 | 37(62.7) | 15(25.4) | 7(11.9) | 59(100.0) |

형을 경지규모별로 보면, 부업경영의 專業化倾向은 零細小農이 78.4%, 中農이 73.3%, 大農은 14.3%이어서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가부업의 專業化程度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같은 農家階層內에서도 專業化的程度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副業品目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발전에 따라 농가부업의 성격변화로 農業이 主業이 되는 농가도 있지만, 농업이 오히려 副業화되는 농가가 더 많기 때문에 농가부업이란 말은 選擇的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2. 傳統的 農家副業 概念의 檢討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農家副業의 概念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農家副業經營類型區分과 관련하여 農家副業의 性格變化에 따른 문제점만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농가부업에 대한 국내의 연구문현들을 살펴보면 농가부업의 개념은 米麥生產에 대한 相對的인 입장에서의 概念定義와 農業의 相對的立場에서의 概念定義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 두가지 부업개념을 傳統的副業概念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부업개념은 <表 6>과 같이 주업인 米麥 生산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보고 이에 대한 相對的 概念으로 농가부업을 概念定

表 6 傳統的 農家副業 概念의 要約

| 구분 | 主業 | 副業 | 關聯文獻數 |
|----|----------------------------|-----------------------------------------|-------|
| I | 미백 생산(축산, 원예, 특작 등 부업에 포함) | ○米麥 이외 농업생산+가내수공업 ○미백이외 농업생산+모든 겸업생산 | 5 |
| II | 농업생산(축산, 원예, 특작농업에 포함) | ○모든 겸업생산+임가공 노임 ○모든 겸업생산+사업 이외 수입 | 2 |

意義하고 있다.

傳統的 副業概念을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농가부업을 米麥生產의 從屬概念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 농업은 米麥이 主從을 이루고 있어 농가 소득의 過半以上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米麥生產은 계절적으로 遊休勞動力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백 이외의 농업생산이나 兼業生產活動에 유휴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主業生產의 補完活動이라고 보고 副業으로 概念定義하고 있다(박기혁 1969, p. 402, 오태현 1972, p. 21, 한국산업개발연구소 1972, p. 27, 농가부업편람 1975, p. 16, 내무부 1976, p. 74). 한편 농가부업을 농업에 대한 從屬concept으로 보는 견해는 지금까지 농가부업에 포함시켜 왔던 畜產, 養蠶, 園藝 등은 農業經營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부업에서 제외시켜 農業活動에 포함시키고, 農業以外의 生產活動만을 농가부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농협중앙회 1969, p. 3, 농수산부 1978, p. 7).

그러나 農家副業의 範圍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主業을 보는 견해가 같다고 하더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주업을 米麥生產으로 보더라도 米麥 이외의 農業生產과 傳統的 家內手工業(완초가공, 축제공 등)만을 농가부업에 포함시키는 견해와(박기혁, 오태현) 미백 이외 농업 생산과 모든 兼業生產活動을 농가부업에 포함시키는 견해

(농가부업편람)가 있는가 하면, 주업을 농업생산으로 보더라도 농가부업에 겸업생산 활동과 事業以外收入 중 賃加工收入만을 포함시키거나 (농협중앙회) 겸업생산 활동과 사업 이외 수입까지도 포함시키기도 한다(농수산부).

이상의 傳統的 副業概念을 요약하면 주업인 미백이나 농업의 相對的 概念으로 農家副業을 概念定義하고 있으나, 미백 생산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都市化·工業化的促進으로 농가부업 경영도 대부분 專業化傾向을 띠고 있고,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부업경영에 투입된 자원의 限界生產力を 높이기 위해서도 농가부업이 專業的인 大規模經營으로 발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백 생산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보고 이에 대한 相對的 概念으로 농가부업을 개념정의 한다는 것은 副業概念의 理解나 政策推進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줄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 農家副業經營은 많은 문제점에直面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매년 農村副業團地의 廢鎖團地는 증가되고 있다.<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1979년까지 造成된 農촌부업단지는 954개였다. 그러나 廢鎖團地는 1973년에 7.1%를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여 1979년에는 34.1%에 달하고 있다.

農家副業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農촌부업단지의 폐쇄가 증가되고 있는 원인을 原料不足, 資金不足, 販路不足 등으로 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전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의들은 농가부업 경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政策立案에 많은 制約을 주고 있다. 즉 농가단위에서 전통적인 농가부업이 대부분 專業的인 형태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데도 기존연구들은

表 7 農村副業園地의 造成 및 營動實態, 1968~1979
單位: 個

| 구 分 | 造成園地數 | | 廢耕園地數 | | 營動園地數 | 廢耕園地率 ⁽³⁾ B/A |
|-----------|----------|---------|-------------------|----------|-------|-----------------------------|
| | 新規 造成 | 累計 A | 年度廢耕 | 累計 B | | |
| 1968~1972 | 545 | 545 | — | — | 545 | 0% |
| 1973 | 7 | 552 | 40 ⁽¹⁾ | 40(39) | 512 | 7.1 |
| 1974 | 46 | 598 | 2 ⁽²⁾ | 42(39) | 556 | 6.5 |
| 1975 | 53 | 651 | 56 | 98(96) | 553 | 14.7 |
| 1976 | 116 | 767 | 60 | 158(155) | 609 | 20.2 |
| 1977 | 104 | 871 | 55 | 213(210) | 658 | 24.1 |
| 1978 | 45 | 916 | 72 | 285(282) | 631 | 30.8 |
| 1979 | 38 | 954 | 42 | 327(325) | 627 | 34.1 |

()는 새마을공장 전환 제외단지 수임.

1) 새마을공장 전환 1개 포함.

2) 새마을공장 전환 2개 포함.

3) 새마을공장 전환단지 수 제외 비율임.

자료: 농수산부, 「농어촌부업현황」, 1975, 「농어촌부업단지 현황(종목별)」, 1980.

傳統的인 農家副業 概念에 입각하여 정책을 건의하였기 때문에 농가부업의 차원에서 정책수립이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부업 육성정책 추진을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앞으로 농가부업 경영은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施設이近代化되고 副業經營 規模도擴大될 것이라고展望하여 볼 때, 從來와 같이 傳統的인 農家副業 概念에 입각한 副業政策推進은 농가부업 육성에 많은 제약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農家副業 育成의合理的인 政策推進을 위해서는 농가부업에 대한概念의 再檢討가先行되고 이에 따른 適切한 支援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要約 및 結論

본 논문에서는 任意指數 構成法에 의거 農家副業 經營指數를 作成하여 農家副業 經營類型을 구분하고 이에 의거 傳統的 副業概念을 검토하였다.

농가부업 경영유형은 구분함에 있어서 農家副業의 專業化 程度와 經營規模 및 傳統的 農家副業

業의 特徵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업시 설액, 상시고용종업원수, 농가소득 중 부업소득 비율, 자가노동력 중 부업경영 노동투하비율 등 4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각 항목을 3등급하고 複數加重評點制를 채택하여 副業的 經營에는 평점 1, 중간에는 평점 2, 農業的 經營에는 평점 3점을 부여하여 각 문항의 점수의 總和를 갖고 59 부업경영자에 대한 농가부업 경영지수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지수를 평균에 標準偏差를 加減하여 評點 4~5점을 副業的 經營(I), 6~9점을 中間(II), 10~12점을 專業的 經營(III)으로 부업 경영 유형을 구분하였다.

農業副業 經營類型別 副業經營者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傳統的 副業(I)경영은 30.5%에 불과하고, 專業的 經營(II+III)은 69.5%이어서, 농가 단위에서 경영되고 있는 농가부업은 대부분 專業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耕地規模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경지규모별 農家副業의 專業化 程度는 영세소농층(경지 1ha미만)에서는 78.4%, 중농(3,000~6,000평)은 73.3%, 대농(6,000평 이상)은 14.3%이어서 대농 이하의 계층에서는 대부분 농가부업은 專業的으로 경영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대농 이하 계층에서는 農家副業이 主業이 되고 농업이 오히려 副業化되는 경향을 보이는 농가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農家副業 概念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농가부업에 대한 국내문헌들을 살펴보면, 미매 생산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보고 이에 대한 相對的 개념으로 농가부업을 概念定義하고 있으나 미매 생산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농가부업을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農家副業 經營類

型 分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의 都市化 • 工業化의 촉진으로 농가부업경영도 투자된 자원의 限界 生產力を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 專業的인 經營形態로 轉換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백생산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보고 이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의 농가부업 개념정의는 개념의 이해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같이 많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農家副業의 合理的인 育成政策의 推進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農家副業 概念에 대한 再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본 논문의 分析結果는 47개 단지의 59호 부업 경영농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事例調查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農家副業 經營指數의 構成項目도 4가지 외에도 包含 可能한 項目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調查規模나 構成項目數가 증가될 경우 副業 經營指數는 물론 農家副業 經營類型 區分도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本 研究結果를 全國的인 現象으로 擴大 解釋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註 1. 농수산부에서는 [副業振興協議會]를 개최하여 (1978. 6) 農家副業 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검토하고 [農漁村副業施策改善案(1978. 8)]을 마련한 바 있으며 1978년부터 축산, 원예, 특작 등 농축산 부업과 고공품을 농가부

업 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등 部分的인 施策改善이 이루어지고 있다.

2. 傳統的 農家副業은 主業인 米麥生產의 보완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農閑期에 自家勞動을 중심으로 手工業的 資本裝備를 이용하여 小規模로 경영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한국 農촌공업화 촉진본부 農가부업 경영과 유통에 관한 연구 1969, pp. 31-35) 傳統的 副業의 特徵은 수공업적 차본장비소유, 자가노동중심, 주업생산보완, 동한기경영 등의 4가지 항목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3. 企業體 경영 규모의 분류는 當時從業員을 중심으로 5인~300인까지는 中小企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이하는 雾細企業, 그 이상은 大企業으로 분류하고 있다 (中企事業基本法, 1976(개정) 제 2조, 제 9조).
 4. 여기에 適用된 公式은 다음과 같다.
- $$\text{信賴度 係數 } r = 2 \left(1 - \frac{\sigma_a^2 + \sigma_b^2}{\sigma_t^2} \right)$$
- 여기에서 σ_t^2 는 全體 指數上의 總評點의 分散이고 σ_a^2 및 σ_b^2 는 半分된 지수상에 있어서의 評點 總和의 分散이다.
5. 農가부업에 대한 傳統的 副業概念의 문제점과 새로운 農家副業 概念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중인 “農家副業 育成政策方向”에 관한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계획임.

參 考 文 獻

- 農水產部, 「農家副業便覽」, 1975.
 _____, 「農漁村副業施策改善(안)」, 1978. 8.
 _____, 「副業振興協議會資料」, 1978. 6.
 _____, 「農家經濟調查 解說」, 1977.
 文丞珪外, 「農家變數의 測定을 위한 6종의 尺度와 指數」, 한국사회학(3집), 1967.
 朴基煥, 「經濟學辭典」, 박영사, 1969.
 吳泰鉉, 「農村副業의 經營實態와 育成方向에 관한 연구」, 1972.
 內務部, 「農外所得增大計劃(시안)」, 1976.
 韓國產業開發研究所, 「農家の 農外所得增大方案 調查研究」, 1972.
 農協中央會, 「農村工業의 經過的 發展形態」, 한국농촌경제문제(조사월보 제 2집), 1965.
 _____, 農外所得과 「農家副業」, 農협조사월보, 1969. 3.
 農協中央會, 「韓國農政20年史」, 1965.
 韓國農村工業化促進本部, 「農村副業經營과 流通에 관한 연구」, 1969.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_____, 「農漁村副業 品目別 現況」, 1980.
 農林部, 「農業經濟(20호)」, 1968.